# 주석

제 33(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 공단의 개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주요대행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탁 사 업 | 위탁연도 | 위 탁 사 업 | 위탁연도 |
|---|---|---|---|
| 지하도상가 관리 | 1983년 | 월드컵경기장 관리 | 2001년 |
| 공영주차장 관리 | 1984년 | 번호판영치지원 | 2002년 |
| 어린이대공원 관리 | 1986년 | 추모공원 관리 | 2002년 |
| 시립승화원 운영 및 묘지관리 | 1987년 | 장애인콜택시운영 | 2003년 |
|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 | 1994년 | 상수도공사감독업무 | 2003년 |
| 공동구 관리 | 1995년 | 청계천관리 | 2005년 |
|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 1996년 | 문화디지털 운영 | 2010년 |
| 도로환경관리 | 1997년 | 서울글로벌센터 운영관리 | 2013년 |
| 공영차고지 관리 | 2000년 | 태양광 발전 | 2014년 |
| 위탁공사감독 업무 | 2000년 | 고척돔경기장 | 2015년 |
|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 2001년 | 장충체육관 | 2015년 |

당기말 현재 공단의 자본금은 235억원으로 전액 서울특별시가 출자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

공단의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법(령),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공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법(령), 지침 및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공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대손충당금

공단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받을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율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공단은 개별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기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은 항목별로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당해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대행사업관리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대행사업관리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공단은 유형자산을 최초에는 취득원가(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며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교체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때)부터 아래의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연 수 |
|---|---|
| 건 물 | 10년 ~ 60년 |
| 구 축 물 | 15년 ~ 40년 |
| 기 계 장 치 | 4년 ~ 10년 |
| 차 량 운 반 구 | 4년 |
| 공 기 구 비 품 | 4년 ~ 20년 |
| 수 탁 자 산 | 4년 |

공단은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운휴자산감가상각비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19일자로 개정된 지방공기업시행규칙에서는 가동설비자산등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계속성원칙에 의거 지방공기업시행규칙 개정후 취득자산에 대하여 종전대로 4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무형자산(영업권 제외)

공단은 개별취득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취득원가(당해 무형자산의 구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사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중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음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음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음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음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음

한편, 공단의 무형자산은 5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6) 수탁자산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자치단체 소유의 자산) 등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공단의 자산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의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별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은 수탁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해당자산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자산손상

공단은 금융자산, 재고자산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공단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 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 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과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 보고기간말에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로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손상차손은 우선적으로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배분되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이러한 경우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또는 영(0) 중 가장 큰 금액 이하로 감소할 수 없습니다.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대행사업예수금

공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특정목적의 예산외에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행사업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지출시 대행사업예수금의 감소로 처리하며 해당 사업 종료시 정산을 통하여 반납하고 있습니다.

(9) 퇴직급여충당부채

공단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퇴직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을 교보생명보험(주)등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납입한 퇴직보험료는 퇴직보험예치금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은 종전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바 있으며 동 금액은 국민연금전환금의 과목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충당부채

공단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중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11) 수익인식

공단의 수익은 자체사업수익과 대행사업수익 및 기타 영업수익으로 구분됩니다. 자체사업은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으로 임대수입, 주차료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수익은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업무위・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사업비 정산시점에 반납대상 금액을 정산환출 등 과목으로 대행사업수익에서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반납된 경우 미지급금으로, 대행사업별로 예산을 초과한 집행액이 발생하는 경우 대행사업수입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 잔액은 반납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은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처리됨에 따라 공단의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습니다.

(12) 법인세등

공단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를 법인세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3.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단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계정과목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 | 38,170 | 39,850 |
| | 보통예금 | 32,091,800 | 32,648,235 |
| | 소 계 | 32,129,970 | 32,688,085 |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45,875,968 | 29,598,930 |
| | 소 계 | 45,875,968 | 29,598,930 |
| 장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1,036,855 | 41,233 |
| | 정기적금 | - | 338 |
| | 소 계 | 1,036,855 | 41,571 |
| 합 계 | | 79,042,793 | 62,328,586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4.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 과 목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기말 |
|---|---|---|---|---|---|
| 토지 | 3,274,393 | - | - | - | 3,274,393 |
| 건물 | 9,883,424 | - | - | (272,454) | 9,610,970 |
| 구축물 | 234,424 | 228,118 | - | (23,997) | 438,545 |
| 기계장치 | 5,816 | - | - | (3,016) | 2,800 |
| 차량운반구 | 42,135 | - | - | (20,798) | 21,337 |
| 공기구비품 | 139,051 | 140,746 | (896) | (118,406) | 160,495 |
| 합 계 | 13,579,243 | 368,864 | (896) | (438,671) | 13,508,540 |

(전기)

(단위 : 천원)

| 과 목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기말 |
|---|---|---|---|---|---|
| 토 지 | 3,274,393 | - | - | - | 3,274,393 |
| 건 물 | 10,155,879 | - | - | (272,454) | 9,883,425 |
| 구축물 | 145,781 | 100,711 | - | (12,067) | 234,425 |
| 기계장치 | 12,207 | - | - | (6,391) | 5,816 |
| 차량운반구 | 66,065 | 18,126 | - | (42,056) | 42,135 |
| 공기구비품 | 234,376 | 45,993 | (19) | (141,300) | 139,050 |
| 합 계 | 13,888,701 | 164,830 | (19) | (474,268) | 13,579,244 |

(2) 당기 및 전기 중 수탁자산 및 수탁자산취득보조금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 과 목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기말 |
|---|---|---|---|---|---|
| 수탁자산 | 77,075,583 | 12,451,705 | (5,006,125) | - | 84,521,163 |
| 감가상각누계액 | (36,607,068) | - | 4,990,441 | (5,457,563) | (37,074,190) |
| 수탁자산취득보조금 | (40,468,515) | (12,451,705) | 15,684 | 5,457,563 | (47,446,973) |
| 합 계 | - | - | - | - | - |

(전기)

(단위 : 천원)

| 과 목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기말 |
|---|---|---|---|---|---|
| 수탁자산 | 65,737,081 | 11,506,095 | (35,697) | (131,896) | 77,075,583 |
| 감가상각누계액 | (33,011,360) | - | 35,697 | (3,631,405) | (36,607,068) |
| 수탁자산취득보조금 | (32,725,721) | (11,506,095) | - | 3,763,301 | (40,468,515) |
| 합 계 | - | - | - | - | - |

상기 수탁자산은 2006년 이후 서울시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입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과 목 | 보유토지 | 당기말 | | 전기말 | |
|---|---|---|---|---|---|
| | | 장부금액 | 공시지가 | 장부금액 | 공시지가 |
| 토지 | 마장동 527-6 | 3,274,393 | 19,579,687 | 3,274,393 | 18,649,102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5. 보험가입자산

당기말 현재 공단이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보험종류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보험기간 | 보험회사 |
|---|---|---|---|---|
| 화재보험 | 건물 및 구축물 | 40,017,776 | 2015.10.5~2016.10.5 | 한화손해보험 |

본사 청사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단 명의의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는 시설물(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등)에 대해서도 공단 명의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 무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 과 목 | 기초 | 취득 | 상각 | 기말 |
|---|---|---|---|---|
| 개발비 | 652,607 | 888,527 | (306,569) | 1,234,565 |

(전기)

(단위 : 천원)

| 과 목 | 기초 | 취득 | 상각 | 기말 |
|---|---|---|---|---|
| 개발비 | 545,118 | 286,930 | (179,441) | 652,607 |

(2) 당기 및 전기중에 발생한 무형자산상각액은 손익계산서상 다음의 계정과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무형자산상각비 | 306,569 | 179,441 |

7. 연구개발비

공단의 당기 및 전기 중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연구개발비(주1) | 353,422 | 219,100 |

(주1) 상기 연구개발비는 손익계산서상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및 시험연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기초잔액 | 50,673,999 | 38,142,934 |
| 퇴직급여지급액 | (8,205,498) | (2,216,238) |
| 충당부채설정액 | 13,480,498 | 14,747,303 |
| 기말잔액 | 55,948,999 | 50,673,999 |
| 차감 : 퇴직보험예치금 | (12,094,394) | (13,964,473) |
| 국민연금전환금 | (2,975) | (7,659) |
| 잔 액 | 43,851,630 | 36,701,867 |

9. 정산환출

(1) 당기 및 전기의 정산환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대행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 9,700,586 | 7,218,856 |
| 본부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 1,671,867 | 124,891 |
| 이자수익 반납액 | 138,366 | 31,625 |
| 합 계 | 11,510,819 | 7,375,372 |

(2) 당기 및 전기의 대행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대행사업비수령액(A) | 243,038,728 | 223,728,480 |
| 대행사업비사용액(B) | (231,512,614) | (217,918,693) |
| 인건비 | 97,450,696 | 91,854,911 |
| 경비 | 97,807,592 | 88,183,339 |
| 자산취득비 | 10,308,816 | 10,843,145 |
| 기관성과급 | 7,253,050 | 12,716,798 |
| 간접관리비 | 18,692,460 | 14,320,500 |
| 대행사업비미사용액(C = A + B) | 11,526,114 | 5,809,787 |
| 이월액순증감(D) | (1,200,875) | 339,486 |
| 전기이월액 | 117,522 | 1,142,781 |
| 전기이월집행액 | (113,804) | (685,773) |
| 차기이월액 | (1,204,593) | (117,522) |
| 미수금순차감액(E) | (624,653) | 1,069,583 |
| 반납액(F = C + D + E) | 9,700,586 | 7,218,856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산수령액 중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잔액으로 차기이월액(선수금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대행사업 | 1,204,593 | 117,522 |
| 본부사업 | - | 39,148 |
| 합 계 | 1,204,593 | 156,670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10. 대행사업예수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행사업예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종 류 | 내 용 | 당 기 | 전 기 |
|---|---|---|---|
| 도로시설물 및 자동차전용도로 | 도로방음시설 설치사업 등 | 1,716,457 | - |
| |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 | - | 6,042 |
| | 구룡터널 외 2개소 노후방재 | - | 1,808,397 |
| | 지하차도 조명등 개선공사 | - | 294,282 |
| | 노면표지 유지보수공사 | - | 2,736 |
| |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 - | 11,043 |
| | 석관동 두산아파트 방음시설 설치 | - | 18,881 |
| | 비상회차로 설치사업 | - | 200,000 |
| | 강변북로 주변 방음벽 교체 등 | 1,045,857 | - |
| 추모공원 | 제2화장장 건립비 | 577,996 | 662,688 |
| 공영주차장 | 구파발이전 공사대금 입금 등 | 8,706 | 8,697 |
| 어린이대공원 | 어린이용품몰 운영 | - | 220,022 |
| 본부 | 학교 태양광발전 사업 | - | 308,465 |
| | 장충체육관 운영 | - | 182,927 |
| 도로환경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사면 수목정비공사 등 | 469,030 | - |
| 지하도상가 |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 판촉행사용 상품 구매 | 83,355 | - |
| 합 계 | | 3,901,401 | 3,724,180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11. 자본금 및 기타자본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5,000,160천원이며, 당기와 전기 중 자본금 및 기타자본잉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자본금 | 23,500,160 | 23,500,160 |
| 기타자본잉여금(주1) | 2,652,928 | 2,652,928 |
| 합 계 | 26,153,088 | 26,153,088 |

(주1) 2006년까지는 대행사업관리원가로 취득한 유형자산을 수탁자산과 기타자본잉여금에 계상하고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관련처분손실을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였으나, 2007년 중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수탁자산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던 부분을 수탁자산의 차감항목인 수탁자산취득보조금계정으로 표시하고 당해 수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수탁자산취득보조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1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공단의 당기 및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 | |
|---|---|---|---|
| 제 33(당)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제 32(전)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 처분예정일 | 2016년 3월 23일 | 처분확정일 | 2015년 3월 31일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당기순이익 | - | - |
|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13. 법인세등

공단의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과세소득의 22.0% (2억 미만은 11.0%)이고, 당기 부담세액은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14. 포괄손익계산서

공단의 당기 및 전기의 포괄손익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 33(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당기순이익 | - | - |
| 포괄이익 | - | - |

15. 현금흐름표

공단은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과 목 | 당 기 | 전 기 |
|---|---|---|
| 장기금융상품 유동성 대체 | 15,862 | 218,030 |

한편,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16. 금융상품

(1) 금융부채의 만기분석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의 종류별 만기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천원)

| 구 분 | 1개월 미만 | 1~3개월 | 3개월~1년 | 1~5년 | 5년 이상 | 합 계 |
|---|---|---|---|---|---|---|
| 미지급금 | - | 9,868,713 | 1,671,867 | - | 366 | 11,540,946 |
| 미지급비용 | 5,527,846 | 7,927 | - | - | - | 5,535,773 |
| 예수보증금 | 267,489 | - | 1,138,781 | 983,710 | - | 2,389,980 |
| 임대보증금 | - | 2,193,985 | 2,070,042 | 289,857 | - | 4,553,884 |
| 합 계 | 5,795,335 | 12,070,625 | 4,880,690 | 1,273,567 | 366 | 24,020,583 |

(전기말)

(단위 : 천원)

| 구 분 | 1개월 미만 | 1~3개월 | 3개월~1년 | 1~5년 | 5년 이상 | 합 계 |
|---|---|---|---|---|---|---|
| 미지급금 | - | 7,343,747 | 31,625 | - | 366 | 7,375,738 |
| 미지급비용 | 3,084,523 | 2,712 | - | - | - | 3,087,235 |
| 예수보증금 | - | - | 950,259 | - | - | 950,259 |
| 임대보증금 | - | - | 2,617,818 | 2,156,350 | - | 4,774,168 |
| 합 계 | 3,084,523 | 7,346,459 | 3,599,702 | 2,156,350 | 366 | 16,187,400 |

(2) 유동성위험관리

공단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 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공단은 1년간의 세입세출 예산에 따른 사업비의 수령 및 지출에 따라 현금흐름이 관리되며 미사용 사업비가 반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는 1년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17. 특수관계자 공시

당기 및 전기의 특수관계자 공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매출 등 | | 매입 등 | | 거래내역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서울특별시 | 217,541,995 | 207,027,599 | - | - | 대행사업 |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미수금 | | 미지급금 | | 선수금 | | 대행사업예수금 |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서울특별시 | 362,904 | 1,069,583 | 11,540,580 | 7,375,372 | 1,204,593 | 156,670 | 3,901,401 | 3,724,180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임직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과 목 | 내 역 | 당 기 | 전 기 |
|---|---|---|---|
| 장기대여금 | 임직원자녀학자금 | 5,336,229 | 5,891,945 |

18. 주요 우발상황

(1) 당기말 현재 공단의 차입금 및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된 어음과 수표는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사용여부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어음과 수표는 없습니다.

(3) 당기말 현재 공단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계 류 법 원 | 원 고 | 피 고 | 사 건 내 용 | 소 송 가 액 | 진 행 상 황 |
|---|---|---|---|---|---|
| 공단이 피고인 사건 | | | | | |
| 서울고등법원 | ㈜송림월드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손해배상(기) | 88,728 | (주1) |
| 서울중앙지법 | 아이랜드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손해배상(기) | 3,582,436 | (주2) |
| 서울중앙지법 | 삼성화재해상보험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구상금 | 67,757 | (주3) |
| 서울남부지법 | 김기분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외1 | 손해배상(자) | 217,914 | (주2) |
| 서울중앙지법 | ㈜케이비손해보험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구상금 | 1,800 | |
| 서울중앙지법 | 가재선 외 1382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임금 | 16,001,581 | (주3) |
| 서울중앙지법 | 김원택 외 376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임금 | 377,000 | |

(주1) 당기에 발생한 소송사건으로서, 당기 중에 1심 판정에서 공단이 승소 하였으며, 보고일 이후 2심판정에서도 공단이 승소하였습니다.

(주2) 당기에 발생한 소송사건으로서,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3) 전기에 발생한 소송사건으로서,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공단이 맺은 중요한 개발사업등과 관련한 협약은 없습니다.

(5) 공단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6) 공단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혹은 신용공여) 및 채무보증은 없습니다.

(7) 당기말 현재 공단은 당좌차월약정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 19.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사항

공단의 대행사업관리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계 정 과 목 | 당 기 | 전 기 |
|---|---|---|
| 급여(주1) | 100,766,639 | 97,574,205 |
| 퇴직급여 | 13,480,498 | 14,747,303 |
| 복리후생비 | 31,181,706 | 28,139,860 |
| 지급임차료 | 9,484,020 | 775,609 |
| 감가상각비 | 438,671 | 474,268 |
| 세금과공과 | 10,301,785 | 1,577,760 |
| 합 계 | 165,653,319 | 143,289,005 |

(주1) 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무기계약직보수, 성과급을 합한 금액입니다.